

## ② 개정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10조의6(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법인이 아닌</u>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.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제10조의6(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다음 각 호</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2. 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